



도민이 중심
신리받는 의회

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5. 4. 22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병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일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
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
다.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(안 제4조)

라.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(안 제5조~안 제6조)

마.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7조)

바. 회계관계공무원(안 제8조)

사. 사업계획서 제출(안 제9조)

- 아.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(안 제10조)
- 자.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11조)
- 차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(안 제12조~안 제13조)
- 카.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(안 제14조~안 제15조)
- 타. 간사 및 시행규칙(안 제16조~안 제17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.06.30. 만료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함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‘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’로 개정함
 - －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에 만료됨으로 인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제3항¹⁾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
- 안 제5조 제4호 ‘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’을 제3호로 이동하고 제4호를 ‘그 밖의 수입금’으로 개정함
 - － 그 밖의 수입금을 신설하는 것은 기금 조성 전 집행잔액, 그 외 기타 수입금 등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

1)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,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, 안 제13조 위원의 임기, 안 제14조 위원장의 직무, 안 제15조 위원회의 운영, 안 제16조 간사는 위원회의 분리 운영을 위해 신설하고,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제3항을 삭제함
- 교육부의 권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분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·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 하에 기금 관리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,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5.06.30.으로 통폐합, 분교장 개편, 이전 재배치, 통합운영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안정적, 효율적 예산지원을 위한 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2030.06.30.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학교별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, 학교 사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성격 및 목적이 다르므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또한,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

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
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
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